

이사회규정

제정 2007.09.03

개정 2013.05.01

개정 2018.12.27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.

제6조(회의)

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
-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의장은

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의2(소 집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會日의 최소 일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제7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의안에 관한 사항
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- 나.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다. 재무제표의 승인
 - 라. 정관의 변경
 - 마. 자본의 감소

- 바.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 - 사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·도
 - 아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
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자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 - 차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- 카. 주식배당 결정
 - 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파. 이사의 보수
 - 하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- 가. 배당의 결정
 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다.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라.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
 - 마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바.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가.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타 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
 또는 해외직접투자
 - 나. 중요한 계약의 체결
 - 다. 신주의 발행
 - 라. 사채의 모집
 - 마.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바. 전환사채의 발행
 - 사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아.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 - 자.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
 - 차.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4. 기 타
- 가.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
나. 이사의 업무 委囑 및 解囑

다. 이사의 競業 승인

라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
제17조의8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승인

마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항
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사항에
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집행한다.

제9조(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
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감사위원회: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: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
그 후보를 추천한다.
 3. 보상위원회: 임원에 대한 보상정책 및 장기인센티브 지급을 위한
성과지표 평가 등을 결정한다.
- ② 위원회는 법령,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
처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
정하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의2(이사회에의 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
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0조(사후승인)

제8조의 부의사항 중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
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각 이사에게 안건의 내용을
통지하고 그 찬반의사에 따라 이를 집행한 후 이사회에 사후승인을
얻어야 한다.

제11조(이사 아닌 자의 출석)
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1항의 개정은 본 규정 개정안 시행일 전에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